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나경원  
이준석 · 김예지 · 박성훈  
김기현 · 김정재 · 박정하  
임이자 · 김상훈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축산 분뇨의 처리·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(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).



법률 제 호

##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·기술적  
지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7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~ 9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0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47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9의2.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 · 기술적 지원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